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가단5155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000,000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단,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기재한 2018. 12. 31.은 2018. 6. 28.의 오기로 보인다(2018. 12. 31.은 등기 접수일임)].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기재한 2018. 12. 31.은 2018. 6. 28.의 오기로 보인다(2018. 12. 31.은 등기 접수일임)].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판사 김영수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고)] . 소외 C(채무자)는 소외 D 주식회사와 E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피고(수익자)는 소외 C의 동생으로서 모친인 망 F가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소외 C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하여 전체 지분을 상속한 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2.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

가. 소외 D(주)와 소외 C 사이의 신용카드이용 약정

소외 D 주식회사와 소외 C는 2013. 2. 25. E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그 무렵 소외 C는 E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의 소외 C에 대하여 카드대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D(주)→G(주)→원고에 이르는 순차적 채권양도 및 통지

D(주)는 2018. 7. 31. 소외 C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소외 G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8. 8. 3.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양도 및 납입 안내). 원고는 2018. 12. 14. 소외 G(주)로부터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2. 17.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양도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통지서).

원고가 G(주)로부터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산확정일¹⁾인 2018. 11. 30.까지

1) 원고의 양수대상 채권원리금 계산기준일자입니다.

양도대상채권은 채무원금 23,108,351 원, 연체이자 3,015,578 원, 기타비용 16,206 원으로 합계 금 26,140,135 원입니다(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지급명령).

다. 원고의 2021. 5. 31. 기준 채권금액

원고의 2021. 5. 31. 기준 채권금액은 원금 23,108,351 원, 인수이자잔액 3,015,578 원, 인수후이자잔액 12,022,364 원으로 합계 금 38,146,313 원입니다(갑 제6호증 채권계산서).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3. 사해행위 등

가. 소외 C의 채무초과상태

소외 C는 위와 같이 E카드대금 등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대출이 시작된 직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나. 사해행위(소외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소외 C의 모친인 망 F는 2018. 6. 28.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C와 피고(소외 C의 동생)외 1명이 있었으므로 소외 C는 상속재산의 1/3 지분이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²⁾

2) 별지 기재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7호증)에 보면, 채권자 주식회사 H가 사해행

그런데, 소외 C는 2018. 12. 3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1/3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11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외 C의 사해의사, 수익자 피고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소외 C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한 사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1/3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툼이 있다면 추후 망 F의 제적등본,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하여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C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는 당시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소외 C와 피고 사이 2018. 12.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그리고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

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인 2018. 12. 31.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계약 이후에 이 사건 수익자인 피고가 2020. 2. 25. 피담보채권최고액 36,500,000원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1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1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사해행위 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수채권금액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일응 이 사건 취소의 범위와 청구금액을 2021. 5. 31.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인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2018.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 관련 상

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금 38,146,313 원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146,313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반환 범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 74,000,000원(갑 제8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나. 소외 C의 법정상속지분 1/2

(2021. 10. 14.자 및 2021. 11. 17.자 각 진해구청장 사실조회 회신)

다. 원고의 채권액 : 금 38,146,313 원

라. 반환범위 : 74,000,000원/2 = 금 37,000,000 원

2. 소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1/2외에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2021. 10. 13.자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사실조회회신). 나머지 청구원인은 종전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용합니다.

